

Special Economic Zones
– implementing
regulation ^{P1}

특별경제구역 – 시행규정

재무부 (MoF)는 이전에 GR-12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 / KEKs*)에 투자하는 납세자를 위한 시행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에 규정 No. PMK-237²을 발표하였습니다. GR-12에 따라 제공되는 KEK의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TaxFlash No.07/2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PMK-237의 시행규정은 GR-12와 전반적으로 일치합니다. PMK-237 규정에 추가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EK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Business Entities (*Badan Usaha/BU*)로 알려진 KEK의 사업활동을 구성(*organizing*)하는 납세자와 다르게 구분됩니다. KEK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사업의 수행자(*Pelaku Usaha/PU*) 라고 합니다.

A. 소득세 혜택 Income Tax Facilities

1. 혜택

a. 법인세 면제 Corporate Income Tax (CIT) Holiday

PMK-237은 100 % 법인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면제 혜택과 구별하기 위해 "KEK-Tax Holiday"라고 함). 이는 최소 투자금이 IDR 100 billion인 KEK에서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¹ Government Regulation No.12 Year 2020 (GR-12) dated and effective from 24 February 2020

² MoF Regulation No.237/PMK.010/2020 (PMK-237) dated 30 December 2020 and effective from 29 January 2021

납세자	투자금 (IDR)	법인세 면제 기간*
BU**	≥ 100 bn	10년
PU	100 bn up to < 500 bn	10년
	500 bn up to < 1 T	15년
	≥ 1 T	20년

* 상업 생산 시점부터 유효함

** 토지 및 건물 (L&B) 양도소득/임대소득 및 주요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감면.

법인세 면제 기간 종료 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50 %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면제 기간 중 원천징수 대상 특정소득(즉, BU의 L&B 양도소득/임대소득 및 주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혜택은 BU의 L&B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Tax Exemption Letter (Surat Keterangan Bebas / SKB)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법인세 공제 CIT Allowance

PMK-237은 GR-12에 따라 제공되는 법인세 공제(일반적인 법인세 공제와 구별하기 위해 "KEK-Tax Allowance"라고 함)의 시행령에 대한 다음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례	적용시기
특정 자산에 투자된 금액의 공제율 30% 상향조정	상업 생산 개시 시점
세무상 가속상각	승인 완료된 달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원천세율 10 % 적용(조세조약 세율이 낮은 경우 조세조약 적용)	승인 완료된 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 적용	승인 완료된 사업연도

KEK-Tax Allowance는 일반적인 CIT Allowance 규정과 유사하나 일반 CIT Allowance 규정과 같이 세법상의 적용 요건을 연속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KEK-Tax Allowance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적격 사업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의 경우 경감된 원천세율은 매출액 또는 실현된 투자비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적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요건

a. 일반 요건

KEK-Tax Holiday 및 KEK-Tax Allowance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KEK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할 것;
- ii. 인도네시아 내 법적 Entity에 해당할 것;
- iii. 하기와 같은 조세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을 것:
 - A KEK-Tax Holiday 또는 KEK-Tax Allowance;
 - Tax Holiday;
 - Tax Allowance;
 - 산업지역(Industrial Zones) 소재 기업 – PU의 경우에만 적용;
 - 노동집약적 산업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공제 혜택 – PU의 경우에만 적용.

b. KEK-Tax Holiday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 요건

납세자는 KEK-Tax Holiday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투자비 IDR 100 billion 으로 KEK의 주요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BU의 경우 납세자는 상업 생산 후 4 년 이내에 최소 IDR 100 billion의 투자 계획을 실현해야 합니다.

Jakarta, West Java, Banten, Central Java, Yogyakarta 및 East Java 지역에 위치한 PU의 경우, 납세자는 KEK-Tax Holiday 승인 발급 후 5 년 이내에 투자 계획을 실현해야 합니다.

c. KEK-Tax Allowance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 요건

주요 사업활동 및 최소 투자비 IDR 100 billion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PU(원하는 경우)는 KEK-Tax Allowance 혜택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업활동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투자비가 IDR 100 billion 미만인 납세자도 KEK-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나, OS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에 대한 납세자의 신청은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기 전 또는 OSS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1 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부(MoF)는 구비 완료된 신청서 수령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의 투자 계획 및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동 실사 결과에 따라 조세 특례 규정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보고 의무

신청서가 승인되면 납세자는 연간 투자(BU 및 PU의 경우) 및 생산 실현 보고서(PU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경고문을 발행하고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금지 규정 및 취소

PMK-237은 다음과 같은 행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 BU / PU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규정에 대한 특정 금지사항 (예: 세제혜택 적용 기간 중 자산 양도 또는 소유권 변경 금지 등).
- 세제혜택 취소되는 경우(예: 당초 주요 사업 활동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 수행 등).

B. 부가세(VAT)/사치세(LST) 특례

GR-12에 따라 KEK 지역이 자유무역지대(FTZ)와 중복되는 경우, FTZ에서 또는 FTZ 로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대해 VAT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PMK-237에 따라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FTZ를 오가는 고정 회선을 사용하는 서비스 제외)의 공급에 대해서는 VAT가 부과됩니다.

PMK-237은 KEK의 VAT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행정절차 및 요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 수입관세, 수입세 및 증지세 혜택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BU 및 PU에 대한 GR-12의 관세 관련 혜택(즉, 수입관세, 수입세 및 증지세 등)은 PMK-23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PMK-237에 따라 관세 지역(Custom Area) 외에서 발생하는 자본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 수입세의 미징수 혜택은 PU를 통해 별도의 KEK, 보세 저장 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또는 FTZ에서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PMK-237은 생산단계에서 PU의 범주(즉, Processing PU, Logistic Centre PU 및 Service PU)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해당 비즈니스와의 관련성에 따른 상품 유형 별로 상이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KEK의 재화 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혜택은 [TaxFlash No.07/2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MK-237은 다음과 같은 기타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방출 및 하도급자의 별도의 처리를 위한 조건 및 목적지 요건;
-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자본재(예: 기계 및 장비)의 양도에 대한 제한 및 요건;
- 세관 신고 절차; 및
- 수입품 취급과 관련한 KEK 셀프 서비스 계약

D. 관광업 KEK 에 대한 조세 특례

GR-12 는 Tourism KEK 내에서의 주택 및 레지던스의 구입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SKB 가 필요합니다.

GR-12 는 Tourism KEK 내의 활동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혜택에 대한 유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MK-237 을 참고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산업을 위한 소비성 원자재 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Tourism KEK 내의 상점이나 쇼핑 센터에서 판매할 상품의 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납부 연기 혜택.

E. 경과규정

GR-12와 PMK-237의 규정의 발행시점에 대한 차이로, PMK-237은 다음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GR-96³에 따라 조세혜택을 승인 받은 BU 및 PU의 경우, 승인기간의 종료일까지 해당 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GR-12 발행 이전에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에 제출된 조세혜택 추천의 경우, PMK-237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법인은 PMK-237에 따라 KEK-Tax Holiday 또는 KEK-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GR-12 발효일 이전에 설립된 BU의 경우;
 - GR-12 발효일 이후 2021 년 3 월 30 일 사이 설립된 BU의 경우;
 - GR-12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사업라이선스/투자라이선스를 보유한 PU의 경우;
 - GR-12 발효일부터 2021 년 3 월 30 일 사이 사업라이선스를 보유한 PU의 경우.
4. 법인의 소재지가 KEK가 되기 전에 이미 KEK에 있었던 법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PU가 될 수 있습니다.

³ Government Regulation No.96 Year 2015 dated and effective from 28 December 2015

5. GR-12에 따라 징수되지 않았지만 2020년 4월부터 PMK-237 발효일 사이
과세된 VAT의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경과 기간 중 적용되는 사항과 관련한 세부 시행규정은 PMK-237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